

한국전기공업진흥회 공고 제'91-2호

### 중소제조업체의 관세분할 납부에 관한 확인 요령 공고

상공부 중전 28280-595('91. 7. 15) 중소기업업체의 관세분할 납부에 관한 지침개정에 의거, 전기부문 중소기업업체의 관세 분할 납부에 관한 확인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.

1991년 7월 22일  
한국전기공업진흥회 회장

— 다 음 —

#### 1. 관세분할납부 대상업체의 중소기업업체 확인

##### 가. 관세분할 납부 대상 업체

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별표와 동법 시행령 별표상의 기준에 의한 중소기업자(동법 제2조 제2항 해당되는 자도 포함된다)

##### 나. 중소기업업체 확인서의 발급

- (1) 관세의 분할납부 대상 업체에 대한 중소기업업체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.
  - 당해물품의 수입 승인서 발급 외국환은행장
  -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(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의한 협동조합 포함)
  - 상공회의소 회장
- (2) 중소기업업체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한다. (단, 6개월 이내에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기간이 포함될 경우에는 동 확인서의 유효기간을 동 기간의 만료일 이내로 한다.)

#### 2. 관세분할납부 대상물품의 국산대체 불가 확인

##### 가. 관세분할 납부 대상 물품

중소제조업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관세율표 제 84류, 제 85류, 제 90류에 해당되는 물품

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- (1) 관세율표에서 부분품으로 분류되지 아니할 것
- (2) 당해관세액이 300만원 이상일 것
- (3) 관세법 제 10조 내지 제 16조의 적용을 받는 물품이 아닐 것
- (4)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지 아니할 것
- (5)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시설재 및 기기

##### 나. 국산대체불가 확인서의 발급

- (1) 관세분할납부 대상 물품 중 건당 신청규모가 30만\$ 미만인 경우에는 본회에서, 기타의 경우에는 한국기계공업진흥회에서 국산대체불가 확인서를 발급한다.
- (2) 국산대체불가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0일로 한다.(단,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확인기간으로부터 유효기간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.)

##### 다. 신청서류

- (1) 중소기업업체 확인서 .....1부
- (2) 사업자등록증 사본 .....1부
- (3) 국산대체불가 확인서 .....3부
- (4) 수입승인서 사본 .....1부
- (5) 국산대체불가 사유서 .....1부
- (6) 기타 확인기관이 검토를 위해 요청하는 서류

##### 라. 국산가부의 판단기준

국내생산이 없거나 국산대체가 불가한 경우

##### 마. 처리기간

- (1) 확인업무의 처리기간은 7일이내로 한다.
- (2) 이의신청에 대한 확인업무 처리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.
- (3)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삼입하지 아니한다.
  - 서류보완에 소요되는 시간
  -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소요되는 시간
  - 공휴일

## 사. 이의신청

- (1) 본회의 확인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신청자는 1회에 한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.
- (2) 이의신청은 확인일 또는 신청서 반려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한다.
  - 이의 신청서 .....1부
  - 확인서 또는 반려된 신청확인서 사본 .....1부
  - 기타 증빙자료

## 아. 심의위원회 운영

확인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 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의 할 수 있다.

- (1) 국산대체불가 판단이 어려운 경우
- (2)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

자. 이 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회 회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공고는 공고일부터 시행한다.

## '91년 외화대출 운용상 시설재 국산대체 불가 확인 지침

### 1. 지원개요

- 용자금리 : 현행 실행금리 LIBOR + 0.25 - 1.25%
- 용자비율
  - 제조업 설비투자(항공기 포함)  
대기업 80%, 중소기업 100%
  - 기타의 경우 대기업 60%, 중소기업 80%
- 용자기간 : 10년 이내
- 동일인한도 : 외국환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
- 여신한도관리 : 제조업 설비투자 및 항공운송용 항공기 도입에 대하여는 계열기업군 여신한도 관리대상에서 예외 취급

## 2. 용자대상

- 시설재 수입자금
  - 수입선다변화품목 공고(상공부 소관)에 규정된 "심한 입초국"으로부터의 시설재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상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산대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시설재에 한해 용자 취급.  
다만 차주가 중소기업 및 중견 수출기업,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비영리법인 연구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첨단기술산업용 시설재임을 상공부 장관이 확인한 분에 한하여 용자취급
- 계획조선용 기자재 수입자금, 상환기간 3년초과 차관 및 외화대출의 만기 원금 상환자금(단, 기업정상화업체에 한함), 수출입은행과의 협조 용자자금 및 전대차관 협조용자자금, 해외투자자금

### 3. 시행일 : '91. 7. 5 부터

- 단, 시행일전에 이미 용자가 취급되었거나 용자 승인된 분과 '90. 12. 31 이내 특별외화대출 추천기관 추천분중 '91. 1. 31이내 한은 한도확인 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지원

### 4. 국산대체불가 확인 근거 및 확인 요령

- 상공부 산정 28010-1559('91. 7. 5)호의 "외화대출 운용상 시설재 국산대체 불가확인"개정통보에 의한 본회 관련 전기업종
- 도입대상 시설재가 국산불가하거나 또는 국산 가능하더라도 경제성, 성능면에서 국산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임을 판단하여 확인
- 한국전기공업진흥회 : 건당 신청규모 미화 30만불 미만
- 대상 업종 : 전기제조업

### 5. 첨단 산업용 확인

- 시설재의 첨단산업용 확인은 상공부 각 공업국에서 시행

6. 확인절차



(외국환은행과 (국산대체 불 (대출신청) 의 외화대출 가 가 확인, 첨단 능 여부 협의) 산업용 확인)

7. 중소기업체 확인서의 발급

- (1) 외화대출 운용상 시설재 국산대체 불가확인에 대한 중소기업체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.
  - 당해물품 수입 승인서 발급 외국환은행장
  -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(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의한 협동조합 포함)
  - 상공회의소 회장

8. 구비서류

- (1) 시설재 국산대체 불가확인서 ..... 3부
- (2) 수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도계약서(OFFER

- (3) SHEET)사본 .....1부
- (3) 카탈로그 및 용도설명서.....1부
- (4) 중소기업체 확인서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
- (5) 수입(국산대체 불가) 사유서.....1부
- (6) 기타 확인검토를 위해 본회가 요청하는 서류

9. 처리기간 : 7일

10. 확인유효기간

- (1) 확인서 유효기간은 확인일로부터 30일까지로 한다(단, 동 유효기간을 연장코자 하는 경우 확인기관으로부터 유효기간 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.)
- (2) “확인유효기간”이라 함은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금융기관에의 접수일까지를 말한다.

10. 기 타

- 이 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확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**노사화합 기반위에 기업발전 국가번영**